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제도 개선 방안

성정용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들어가며

2020년 6월 9일 ‘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신규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월 18일과 금년 1월 17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세 개의 역사문화권이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역사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이 법은 사실 역사문화권의 정의와 공간 범위 설정 등에서 일정 부분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이라고 한 것은 다른 문화유산 관련 법률과는 다소 결이 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비지정문화유산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문화유산 관리·보존 정책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은 제2조에 담겨 있다. 2조 1항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 기존의 ‘문화재’가 곧 ‘문화유산’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필자도 이를 감안하여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는 유형과 무형 유산 모두 문화의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 속에 유형과 무형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다. 한편 논지 전개상 필요하거나 혹은 현재의 법에 따른 정의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 문화재라는 용어를 불가피하게 혼용하였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각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구분	시간	공간
고구려역사문화권	고구려 시대	서울·경기·충북 지역 등
백제역사문화권	백제 시대	서울·경기·충청·전북 지역 중심
신라역사문화권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	경북 지역 중심
가야역사문화권	가야 시대	경남·경북·부산·전남·전북 지역 중심
마한역사문화권	마한 시대	충청·광주·전남·전북 지역 중심
탐라역사문화권	탐라 시대	제주 지역 중심
중원역사문화권	고구려·백제·신라 시대	충북·강원·경북·경기 지역 중심
예맥역사문화권	예맥 시대	강원 지역 중심
후백제역사문화권	후백제 시대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 지역 중심

한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역사문화환경’(제2조 2항)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라 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제2조 3항)이며,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성격과 지향점

이러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역사문화권정비법」이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그간의 비지정문화유산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유산 관련 특별법으로서 전국성

전술한 것과 같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외에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 등이 있다. 그런데 「역

사문화권정비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특별법들은 그 명칭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특정한 지역이나 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지원 대상이 대단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비록 여러 개의 역사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문화권의 대상 지역은 결국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 전체이다. 즉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9개로 구분하고 그 지역을 특정하였지만, 이 법에서 주목할 것은 9개의 역사문화권역이 아니라 그 대상 공간이 곧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는 점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토대가 되는 역사문화권역들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권들을 특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고대 역사문화권으로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특정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의 성격을 잘 조명할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느 지역이든 여러 역사문화권이 시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특정한 역사문화권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여러 역사문화권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화유산 관련 특별법의 목적과 대상

명칭	제정일	목적	공간 범위와 대상	행위제한
「고도육성법」	2004.3.5.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	경주·부여·공주·익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건축물 등의 신개축과 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택지 조성 및 토지 개간, 수목 식대, 도로 신설 등
「신라왕경법」	2019.12.10.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신라왕경 핵심유적(월성, 황룡사, 동궁, 월지, 첨성대 등)	
「풍납토성법」	2020.6.9.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	풍납토성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위임
「역사문화권정비법」	2020.6.9.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 등의 신개축과 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택지 조성 및 토지 개간, 수목 식대, 도로 신설 등(정비구역 해제되면 제한 없음)

래야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진정으로 전국적인 포괄성을 갖는 특별법으로서 그 의의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지정문화유산의 소외 현상 극복과 무형 유산의 지원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1항). 원론적으로는 모든 문화유산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야 하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을 토대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시·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문화유산 제도는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원론적인 동등성과 달리 지정된 문화유산이 지정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정비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겠으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정문화유산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의 경우 비지정문화유산이면서도 사실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지정문화유산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보존조치 유적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데 연 30억 원 내외의 예산만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구분 없이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여 조사와 연구·정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위주에서 벗어나 비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유산 관리·지원 체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지정·비지정문화유산을 구분하지 않고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지정문화유산들은 「문화재보

호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지정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기본계획에 천명되어 있다(문화재청, 2022a). 이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법」이 향후 자리 잡아 간다면, 그동안 소외되고 방치되다시피 하였던 비지정문화유산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비지정문화유산이면서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성격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을 설정한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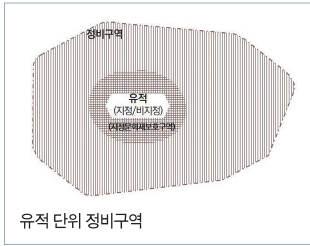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 위주의 정책

「문화재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제1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 5항). 즉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 바깥의 일정한 범위도 개발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보호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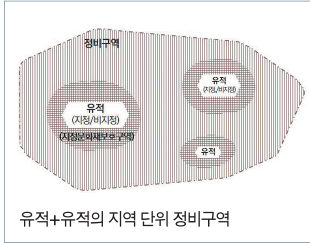
이에 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해당 문화유산과 그 주변 일정 범위**를 ‘정비구역’으로 신청·지정 받는 것(제14조 1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는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방향에 따라 정비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일부 제약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이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해 전술한 것과 같이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비구역’은 ‘정비’를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그 기본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비구역은 해당 문화유산과 도시 경관이 어울리도록 정비를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이를 통해 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중 원형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지보존’ 조치된 유적의 경우 당초 의도하였던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등 현실적으로는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법적 보호는 물론 예산이 투입되기도 어려워 관리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국가 지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와 결부된다고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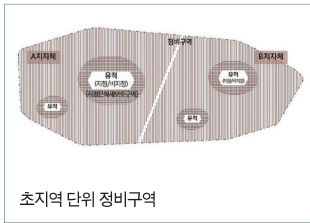
** ‘정비구역’은 문화유산과 그 외부의 일정 공간을 묶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문화유산 외부의 공간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적 단위 정비구역



유적+유적의 지역 단위 정비구역



초지역 단위 정비구역

유적 정비구역 설정 모식도

출처: 한국고고학회(2022)

과 같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 위주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으로서, 「문화재보호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면적(面的)이고 공간적인 관리·정비·활용 체계로 전환

기존의 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에서는 대개 해당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정비도 그 문화유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해당 문화유산 외부 공간(정비구역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계획대로 다양한 형태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비의 토대가 되는 정비구역 설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한국고고학회, 2022). 첫 번째는 ‘유적 단위 정비구역’으로서, 개별 유적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적+유적이 복합되는 지역 단위 정비구역’으로서, 단위 유적 중심의 정비구역 설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 내에서 유사한 성격 혹은 시기의 유적을 선정하여 두 개 이상의 유적들이 복합된 구역이다. 세 번째는 ‘초(超)지역 단위 정비구역’으로서,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어 복수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시기의 유적 가운데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복수의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역을 넘는 초지역 단위로 정비구역을 설정해야 유적의 성격이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고, 지역 간 연계와 활용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그 구역 내를 조화롭게 꾸밈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세 가지 형태의 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포괄하고 있다. 즉 기존의 문화유산 정비가 주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화유산과 그 주변 공간을 포괄하여 넓고 다양한 ‘정비구역’ 설정을 통해 문화유산과 주변 공간환경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의 개별 유적 단위의 점적(點的) 정비에서 면적(面的)·공간적 관리와 정비·활용 체계로의 일대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역사가 뒷받침되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역사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개념의 문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 1항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의 ‘고유한 정체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전적 의미처럼 ‘고정불변의 본래적 특징(정체성)’으로 이해할 경우, 마치 원시(原始) 내지 고대(古代) 이후 지금까지 각 권역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의에서 ‘형성·발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문화유산’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동일 권역 내의 문화유산이라 하여도 문화유산을 창출한 주체에 따라 또는 그 문화의 갈래에 따라 다양한 성격이 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유한 정체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으로 이해해야 하며, ‘각 권역의 특징’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 성격의 문화를 종합적이고 구성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성이 있는 표현인 ‘고유한 정체성’은 삭제하고 ‘특정적인 역사적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대 시기’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설정 시기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설정의 기본 단위로서 정치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국가나 지역 단위’라는 표현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학술적으로 부적합하고 시간적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명칭에서 시대를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를 고려하면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제2조 1항을 “역사문화권이란 고대 시기에 각 국가나 지역 단위로 유형·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생산·축적하며 특징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온 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제2조 2항을 “역사문화환경이란 역

사문화권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권의 설정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도 않고 복잡적이면서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 특히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역사문화권의 공간들을 시·도 단위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그 주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빠져 있어, 문화권별 지역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문화권별 지역을 역사적 실상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역사문화권의 복합적·다층적 성격

구분	문화	정치체	국경(영역국가)	성격
고구려역사문화권	○	○	○	복합성
백제역사문화권	○	○	○	복합성
신라역사문화권	○	○	○	복합성
가야역사문화권	○	○		복합성
후백제역사문화권	○	○	△	복합성
마한역사문화권	○	○ ⇒ ×		복합성
탐라역사문화권	○	× ⇒ ○		복합성
중원역사문화권	○			지역성
예맥역사문화권	○			종족성

한편 마한문화권과 대비되는 같은 시기의 진변한문화권이 빠져 있는 등 문화권 설정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역사적 실상에 맞게 고조선문화권, 예맥·부여·고구려문화권, 마한·백제문화권, 진한·신라문화권, 변한·가야문화권, 주호·탐라문화권, 발해문화권, 통일신라문화권, 후삼국문화권 등으로 구분하지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노중국, 2023).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 2022년 11월 11일에 한국고고학회 주최로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열린 ‘역사문화권의 가치·개념 및 시공간범위연구 3차 학술포럼’ 토론 석상에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제법 소장이 역사문화권에 각 지역을 삽입하는 것의 당위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역사문화권 정의에 대해 역사성과 학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비구역 용어의 문제

전술한 것과 같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제3장(제14~23조)에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작성 등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 있으며, 정비구역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 왜 지정하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 법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관계없이 고대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유산을 핵심소재로 하여 그 주변 공간을 문화유산과 어울리게 가꾸고 꾸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그 공간을 찾게 하려고 제정되었다. 한마디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가꿈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정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는 그리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해당 주민들에게는 무언가 강제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불식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바, ‘문화유산 향유공간 조성사업’과 같은 대체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202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연구 최종 보고 자료.
- 2 노중국. (2023).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의의, 고대 삼국 경합의 중심지 중원,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5-16.
- 3 문화재청. (2022a).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
- 4 문화재청. (2022b).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가이드.
- 5 성정용. (2023). 역사문화권의 주용 내용과 ‘역사문화권정비법’ 안착을 위한 과제, 고대 삼국 경합의 중심지 중원,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17-32.
- 6 한국고고학회. (2022). 역사문화권의 가치 및 개념과 시공간 범위 연구 보고서.